

폐수 [] 수탁처리업
[] 재이용업 등록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 리 기 15일 간
------	-----	----------------

신청인	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 표 자	
	주 소	(전화번호:)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
	착공일 년 월 일	설치완료일 년 월 일

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재이용시설

시설명	규격	대수	시설명	규격	대수

수질오염방지시설

처리대상 폐수				처리능력	m³ /일	
처리방법						
시설명	규격	대수	시설명	규격	대수	
폐수운반방법						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1항 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

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라 [] 폐수 수탁처리업
[] 폐수 재이용업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 2.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3.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. 폐수처리방법별(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)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.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(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)로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 하여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도면 1부 6.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(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, 고정식관망 이용 등) 7.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(원본 확인) 1부	수수료 10,000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,000원)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2.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※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